

의안번호	제783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심영석 · 공창섭 · 이우완 · 이해련 · 김종대 · 이종화 김인길 · 백승규 · 전홍표 · 권성현 · 김장하 · 김경수 구점득 · 김태웅 · 김상현 · 문순규 · 김상찬 · 정순욱 김경희 · 박성원 · 김우겸 · 한은정 · 주철우 · 이천수 이찬호 · 조영명 · 박춘덕 · 최희정 · 전병호 · 박현재 의원
발의연월일	2021. 7. 7.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3
----------	-----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심영석·공창섭·이우완·이해련·김종대·이종화  
김인길·백승규·전홍표·권성현·김장하·김경수  
구점득·김태웅·김상현·문순규·김상찬·정순욱  
김경희·박성원·김우겸·한은정·주철우·이천수  
이찬호·조영명·박춘덕·최희정·전병호·박현재  
의원(30명)

##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시장의 책무)”를“(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호기”를 “신호기·”로 한다.

제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2항제3호 중 “위탁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사 시행자”를 “공사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시방서”를 각각 “공사설명서”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사 시행”을 “공사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를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 현장”을 “공사현장”으

로, “공사시방서”를 “공사설명서”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lt;신설&gt;</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u>마련해야</u> -----.</p> <p>② <u>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u></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u>수립하여야</u> 한다.</p> <p>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어린이 통학로 내의 <u>신호기</u>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p> <p>4. ~ 8. (생략)</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 ----- ----- <u>수립해야</u> -----.</p> <p>② ----- ----- <u>사항</u>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신호기</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 ----- -----</p>

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2. (생략)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생략)

<신 설>

-----  
----- 해야 -----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위탁교육
4. (현행과 같음)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 6.·7. (생략)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

----- 공사시행자-----  
----- 공사설명서-----

② -----  
- 공사설명서 -----  
- 사항-----.

1. 공사시행 -----
2. ~ 4. (현행과 같음)
5. -----  
관-----
- 6.·7. (현행과 같음)

③ ----- 공사현장-----  
----- 공사설명

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4. (생략)

제9조 (생략)

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 각 호의 -----  
-----  
-----  
-----.

1. (현행과 같음)
2. ----- 교통안전교육 -----
3. 4.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 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인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 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251호,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심영석 의원)**

1. 의회사무국-5741(2021. 6. 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 조례 개정 개요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	발의자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심영석 의 원

- 붙임 : 1.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1부.  
 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1부.  
 3. 조문별 검토의견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5. 관계법령 발췌문 및 조례 1부. 끝.

## 창 원 시



주무관 강혜영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기획관      전결 2021. 6. 16.      김종필

협조자

시행 기획관-7823      (2021. 6. 16.)      접수 의회사무국-6125      (2021. 6. 16.)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aeiou1005@korea.kr](mailto:aeiou1005@korea.kr)      / 비공개(5)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검토 보고

심영석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I 일부개정 조례안 개요

### 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66조(의안의 발의)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② 개정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상정시기 :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발 의 자 :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
-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II 검토내용

### ①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저촉 사항 없음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② 주요 조문별 개정(안) : 부서수정의견 없음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 마련해야 -----.</p> <p>② 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li> <li>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li> </ol>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lt;신 설&gt;</p>	<p><u>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u>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u>제10조(협력체계 구축)</u>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u>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u>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③ 타 지자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 123개소(광역13, 기초110)**

구 분		자 치 단 체 명
광역자치단체 (13/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110/227)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동구
	경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이천시, 하남시
	강원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충북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전남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전북	고창군, 익산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의성군
경남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 4] 소요예산

##### ○ 재정부담항목

- 조례안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 조례안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조례안 제12조(지원)

##### ○ 주요 재정 부담 사항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를 제외함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5] 종합의견 : 조례안 개정 찬성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1부.  
2. 조문별 검토의견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발췌문 및 조례 1부. 끝.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심영석 의원

###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시장의 책무)”를“(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호기”를 “신호기·”로 한다.

제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2항제1호 중 “자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탁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사 시행자”를 “공사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시방서”를 각각 “공사설명서”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사 시행”을 “공사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대”를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 현장”을 “공사현장”으로, “공사시방서”를 “공사설명서”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u>마련해야</u> -----.</p> <p>② <u>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u></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u>수립하여야</u> 한다.</p> <p>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어린이 통학로 내의 <u>신호기</u>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p> <p>4. ~ 8. (생략)</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 ----- ----- <u>수립해야</u> -----.</p> <p>② ----- ----- <u>사항</u>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신호기</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 ----- -----</p>

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생략)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생략)

<신 설>

-----  
----- 해야 -----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자체 교육
2. (현행과 같음)
3. -----  
위탁교육
4. (현행과 같음)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

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 6.·7. (생략)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  
-----  
-----  
-----  
----- 공사시행자-----  
----- 공사설명서-----  
-----.

② -----  
- 공사설명서 -----  
- 사항-----.

1. 공사시행 -----  
-----
2. ~ 4. (현행과 같음)
5. -----  
관-----
- 6.·7. (현행과 같음)

③ -----

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4. (생략)

----- 공  
사현장-----  
----- 공사설명  
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 각  
호의 -----  
-----  
-----.

1. (현행과 같음)
2. ----- 교통안전교육 -----
3. 4.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 조문별 검토의견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li> <li>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li> <li>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li> <li>3. 어린이 통학로 내의 <u>신호기 안전표지</u>에 관한 사항</li> <li>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li> <li>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li> <li>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ol>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 ----- <u>수립해야</u> -----.</p> <p>② ----- ----- <u>사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 (현행과 같음)</li> <li>3. ----- <u>신호기</u> · ----- -----</li> <li>4. ~ 8.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 (현행과 같음)</li> <li>3. (개정안과 같음)</li> <li>4. ~ 8. (현행과 같음)</li> </ol>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p>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u>자체교육</u></p> <p>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p> <p>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u>위탁교육</u></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p>	<p>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u>자체 교육</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위탁교육</u></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신 설〉</p> <p><u>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u>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u>  (개정안과 같음)</p>
<p><u>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u>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u>공사 시행자</u>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u>공사시방서</u>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p>	<p><u>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u> ① -----  -----  -----  -----  -----  <u>공사시방서</u> -----  <u>공사설명서</u> -----  -----.</p>	<p><u>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u> (개정안과 같음)</p>

<p>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p>	<p>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검토의견</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행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p> <p>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p> <p>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p> <p>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p> <p>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공사  설명서 ----- 사항  -----.</p> <p>1. 공사시행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관</p> <p>6. 7.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6. 7. (현행과 같음)</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u>공사 현장</u>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u>공사시방서</u>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u>공사현장</u>에 대하여 <u>공사시행</u>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 ----- <u>공사현장</u> ----- ----- ----- <u>공사설명서</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 <u>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제10조(협력체계 구축) (개정안과 같음)</u></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신 설〉</p> <p><u>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개정안과 같음)</u></p>
<p><u>제8조(개정지원) ①</u>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에 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p> <p>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u>교통안전 교육</u>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p>	<p><u>제12조(지원) ----- 각 호의 -----</u></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교통안전교육</u> -----</p>	<p><u>제12조(지원) (개정안과 같음)</u></p> <p>1. (현행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원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p>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 식 확립 사업</p> <p>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3. 4. (현행과 같음)</p>	<p>3. 4. (현행과 같음)</p>
<p><u>제9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3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제13조</u> (개정안과 같음)</p>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 조례안 제7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조례안 제12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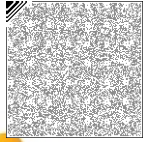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소요 항목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하곳길 교통지도 사업 등
- 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정도에 따라 산출근거가 달라  
지므로 추후 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산출예산을 제시토록 하겠음.

4. 작성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 창원시 의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희 송부(심영석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희하오니 **2021. 6. 21.(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2021. 6. 7.      광기권

협조자 건설해양농림 정희교  
전문위원

시행 의회사무국-5741      (2021. 6. 7.)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151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hyeri0815@korea.kr](mailto:hyeri0815@korea.kr)      / 비공개(5)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심영석 의원

###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시장의 책무)”를“(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호기”를 “신호기·”로 한다.

제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2항제1호 중 “자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탁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사 시행자”를 “공사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시방서”를 각각 “공사설명서”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사 시행”을 “공사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대”를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 현장”을 “공사현장”으로, “공사시방서”를 “공사설명서”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u>마련해야</u> -----.</p> <p>② <u>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u></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u>수립하여야</u> 한다.</p> <p>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어린이 통학로 내의 <u>신호기</u>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p> <p>4. ~ 8. (생략)</p>	<p>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 ----- ----- <u>수립해야</u> -----.</p> <p>② ----- ----- <u>사항</u>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신호기</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p>	<p>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 ----- -----</p>

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생략)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생략)

<신 설>

-----  
----- 해야 -----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자체 교육
2. (현행과 같음)
3. -----  
위탁교육
4. (현행과 같음)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

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 6.·7. (생략)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  
-----  
-----  
-----  
----- 공사시행자-----  
----- 공사설명서-----  
-----  
-----.

② -----  
- 공사설명서 -----  
- 사항-----.

1. 공사시행 -----  
-----
2. ~ 4. (현행과 같음)
5. -----  
관-----
- 6.·7. (현행과 같음)

③ -----

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4. (생략)

----- 공  
사현장-----  
----- 공사설명  
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 각  
호의 -----  
-----  
-----.

1. (현행과 같음)
2. ----- 교통안전교육 -----
3. 4.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